#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03

발의연월일: 2025. 5. 1.

발 의 자:백선희·신영대·김재원

김준형 • 이해민 • 이학영

신장식 · 김선민 · 혀 영

김성환 · 황명선 · 서왕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자는 현행대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65 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77조의2제2항제1호).

법률 제 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70세 이후에 고용(70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70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자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의2제2항제1호 중 "65세"를 각각 "70세"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적용 제외) ① (생 략)	제10조(적용 제외) ① (현행과 같
	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	② 70세 이후에 고용(70세 전
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사람이 70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
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u>아니한다.</u>	아니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의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자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
	<u>지 아니한다.</u>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생 략)	대한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②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	,
1. <u>65세</u>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	1. <u>70세</u>
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	

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 계약(<u>65세</u> 전부터 피보험자격 을 유지하던 사람이 <u>65세</u> 이 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 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 3. (생략)

③ ~ ⑥ (생 략)

<u>70</u> 4]
<u>70세</u>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형행과 같음)